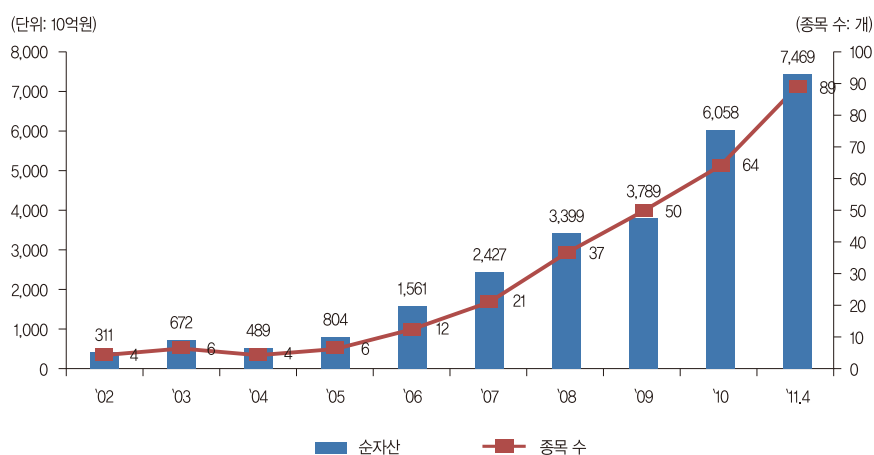


ETF 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

- 국내 ETF 시장개설 후 규모는 20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전체펀드 대비 ETF 비중은 미약한 수준임.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최소 상장금액 하향조정,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 철폐 및 ETF LP(유동성공급자)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ETF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
- ETF 상장규제 완화로 운용사들의 신상품 출시가 용이해지며 향후 투자자들의 자금인출 등으로 인한 강제퇴출 우려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됨. 또한 유동성공급이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

-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개설 후 종목 수 및 자산규모가 2011년 4월 기준 각각 20배 이상 성장하였지만 전체 펀드 대비 ETF 비중은 미약한 수준임
 - 2002년 10월 ETF 시장개설 시 종목 수 및 자산규모는 각각 4종목, 3,110억원이었으며, 2011년 4월 각각 89개, 7조4,690억원으로 ETF 시장개설 후 20배 이상 성장함
 - 특히,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후 ETF의 기초자산이 통화, 상품, 채권 등으로 넓어지고 납입방식도 확대되면서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자 ETF 출시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임

국내 ETF 시장 현황



주 : 2011년은 4월 26일 기준임
자료: 한국거래소



- 그러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ETF 시장은 전체 펀드시장 규모대비 1.5%에 불과하여 성장잠재력 확보 및 시장활성화 노력이 필요함
 - 2010년 3분기 기준, 전세계 전체 펀드 대비 ETF 비중은 5.6%이며, 그 중 미국이 7.4%로 가장 높음

전세계 펀드시장 대비 한국 ETF 시장 규모

(단위: 조원, %)

시장규모	전세계	미국	유럽	한국
전체펀드	26,931	13,765	8,962	325
ETF	1,509.5	1,025.5	318.9	5.6
비 중	5.6%	7.4%	3.6%	1.5%

주 : 전체펀드 및 ETF 시장규모는 2010년 3분기 기준임
 자료: 한국거래소

□ 이에 따라, 한국거래소는 국내 ETF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 상장금액하향조정,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 철폐 및 ETF LP(유동성공급자)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토록 함

- 기존에 최소 상장금액은 최초 상장시 100억원 이상으로 규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었음
 - 또한 상장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강제 상장폐지(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시)하였음
 - 거래소는 최소 상장금액 요건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였으며 신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할 방침
 - 또한, 상장유지 요건(50억원, 5만주 이상)에 미달할 경우 강제 상장폐지되어 자산운용사의 상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50억원 미만 ETF는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
- ETF 내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 및 거래상대방 적격요건도 완화함
 - 기존에 위험성을 고려해 10%로 제한돼 있던 ETF 내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를 일반펀드의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인 100%까지 확대함으로써 편입할 수 있는 자산군을 넓혀 보다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함
 - 또한 거래상대방의 적격요건을 투자적격등급 'BBB' 이상으로 변경하고, 보증인·담보물도 인정하기로 함
- 양방향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, LP(유동성공급자) 인센티브 지급범위를 확대토록 함
 - LP는 신고비율(통상 1%)내에서 매수·매도 호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는 투자자의 호가가 이미 존재할 경우 단방향 호가제시도 가능하였으나,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 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 호가를 의무화하도록 함
 - 그동안 거래소만 지급했던 LP 인센티브를 예탁결제원에서도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ETF 시장에서 LP의 참여를 활성화함

- 또한, LP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도 분기별로 해당 LP가 거래소에 납부한 대량매매(자기매매) 수수료를 기준으로 LP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, 변경 후 LP가 유관기관인 거래소와 위탁결제원에 납부한 ETF 수수료(전년도 수수료 한도)를 LP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환급함
- 이에 따라 개선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전체 인센티브 지급액이 최대 7,800만원이었으나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

□ ETF 상장규제 완화로 운용사들의 신상품 출시가 용이해지며 향후 투자자들의 자금인출 등으로 인한 강제퇴출 우려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됨. 또한 유동성공급이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

- 상품다양성 측면에서 아시아 1위인 일본을 제치고 연내 1위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함
 - 3분기내 원상장 종목수는 100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참고로 4월 기준 국내 ETF는 89개 상장되었으며, 일본은 90개 상장되어 있음
- 정부와 거래소는 제도개선을 통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및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
 - 신상품 출시가 용이해짐에 따라 유동성공급이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
 - 또한 LP 호가가 없는 경우 소량의 시장가 주문에도 가격이 급등락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연구원 장지혜